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11. 19.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32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7(과태료 부과 조항)의 과태료가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바,
- 나.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세부 부과기준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 법령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초과하여 규정 중이므로 부과금액 정비(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10. 18. ~ 2018. 11. 7.(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부 부과기준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가. 1회 위반한 경우 “30만원”을 “20만원”으로,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을 “40만원”으로,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을 “8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시재생과장	홍 재 창
	도시광고담당	최 승 재 (746-6241)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반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거 법조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법 제20 조제2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가. 1회 위반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 조제2항	3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50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p>[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반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거 법조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법 제20 조제2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가. 1회 위반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4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8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 조제2항	2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40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80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 조제2항	3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50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 조제2항	20만원																									
가. 1회 위반한 경우		40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80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3.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홍 재 창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